

민주노총 2019년 임금요구안

(임금인상요구안/임금정책요구안/최저임금요구안)

- 정규직·비정규직 동일 정액 월 205,000원 임금인상 요구기로
- 임금정책으로 최고임금제(최저임금의 30배)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기 요구
- 최저임금 요구안은 최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기로

□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19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은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동일 정액 인상안)으로 총액기준 월 205,000원(인상률 6.0%)을 제시합니다.

- ① 205,000원 인상액은 2018년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3,417,630원) 기준 6.0% 인상
- ② 동일 정액 인상(205,000원)을 위한 저임금노동자(평균급여 X 2/3) 임금인상요구율 9.0%
- ③ 동일 정액 인상(205,000원)을 위한 고임금노동자(평균급여 X 3/2) 임금인상요구율 4.0%

□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임금요구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 ②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 ③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2019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 반영
- ② 절대적 생계 수준 유지 및 상대적 경제성장 과실 공유
- ③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5%), 소득분배 개선분(1.8%)을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
- ④ 소득분배 개선분(1.8%)은 최근 10년간 경제지표와 임금인상률을 비교하여 산출

☐ 민주노총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실현 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축소

- ① 현재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21만원, 비정규직 163만원(정규직대비 50.7%)
- ② 월 205,000원 인상 시 정규직은 3,415,000원, 비정규직은 1,835,000원 (정규직대비 53.7%로 개선)
- ③ 3% 임금격차 축소하는 효과 발생

☐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금정책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최저임금 30배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최고임금제' 도입
- ②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고착 시키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추구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보호, 편법적 임금제도 개선 실현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은 시급 1만 원(월급 환산 시 209만 원) 으로 정하되 관례에 따라 노동·시민·사회 등 유관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 단체와 협의해서 최종결정 할 예정입니다.

※ 해설자료 -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첨부

201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 요약 >

- ☐ 민주노총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19년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임금요구안을 제시함.
- ☐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 정액 인상안’ (월 205,000원)을 2019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함.
- ☐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2018년 전체노동자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절대적 생계 수준 유지 및 상대적 경제성장 과실 공유를 목표로 했음 ▲월 205,000원의 인상액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6.0%인데, 이는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5%)의 합이 4.2%이고,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1.8%)을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음.
- ☐ 한편 월 205,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다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21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63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50.7%임. 월 205,000원 요구안이 달성되면, 정규직은 월 3,415,000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835,000원으로 인상됨.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현행 50.7%에서 53.7%로 개선함으로써 3%p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최고임금제 도입을 촉구함. 또한 포괄임금제도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고착화시킴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보호,

편법적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임금하락 없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를 촉구함.

-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은 1만 원(월급 209만 원)으로 정하되 관례에 따라 노동·시민·사회 등 유관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단체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

1. 2019년 임금요구안 기조 및 방향

- 민주노총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 노동 일소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19년 임금요구안을 제시함.

- 민주노총 임금정책은 △ ‘연대임금’ 과 △ ‘생계(생활)임금’ 의 두 가지 원칙을 핵심으로 함.

※ ‘연대임금’ 은 노동유연화와 함께 심각해진 노동자 내부의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확립되어진 원칙임. 또한, ‘연대임금’ 원칙은 조직되어진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조직으로 올곧게 서기위한 방향임.

※ ‘생계(생활)임금’ 은 자본의 ‘노동생산성’ 논리에 따른 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생계(생활)를 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확립되어짐.

2. 임금동향과 문제점

1) 노동소득분배 악화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미달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초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일관된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심각한 소득분배 악화가 진행되어 왔었음.

- 지난 10년(2008~2017)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16%임. 이에 반해 노동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3.24~3.34에 그쳐, 양자 간 격차는 1.82~1.84%에 달함.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 구조가 악화 상태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표〉 최근 10년 간 경제지표와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추이와 격차(단위 : %, %포인트)

연도	경제지표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명목임금인상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1)	물가 상승률(2)	(1)+(2)	5인 이상 상용직(A)	임금노동자 1인 이상(B)	A1)	B2)
2008	2.3	4.7	7.0	4.4	5.8	-2.6	-1.2
2009	0.3	2.8	3.1	2.2	0.3	-0.9	-2.8
2010	6.2	3.0	9.2	6.4	5.2	-2.8	-4.0
2011	3.6	4.0	7.6	-0.9	4.3	-8.5	-3.3
2012	2.0	2.2	4.2	5.3	3.5	1.1	-0.7
2013	2.8	1.3	4.1	3.8	3.7	-0.3	-0.5
2014	3.3	1.3	4.6	2.4	2.3	-2.2	-2.3
2015	3.1	0.7	3.8	3.3	2.9	-0.5	-0.8
2016	2.8	1.0	3.8	3.8	3.1	0	-0.7
2017	2.7	1.5	4.2	2.7	2.1	-1.5	-2.1
10년 평균	2.91	2.25	5.16	3.34	3.32	-1.82	-1.84

1) A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5인 이상 상용직 월 임금총액

2) B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에 따른 1인 이상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임금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2) 임금불평등 심각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7년 8월 242만 원에서 2018년 8월 256만 원으로 14만 원 증가.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450만 원에서 454만 원으로 4만원 증가.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7년 8월 13,722원에서 2018년 8월 14,607원으로 885원 증가. 하위 10%는 5,987원에서 6,908원으로 921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4,753원에서 25,905원으로 1,152원 증가.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13배에서 3.75배로 감소하고 있으나 임금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표〉 연도별 임금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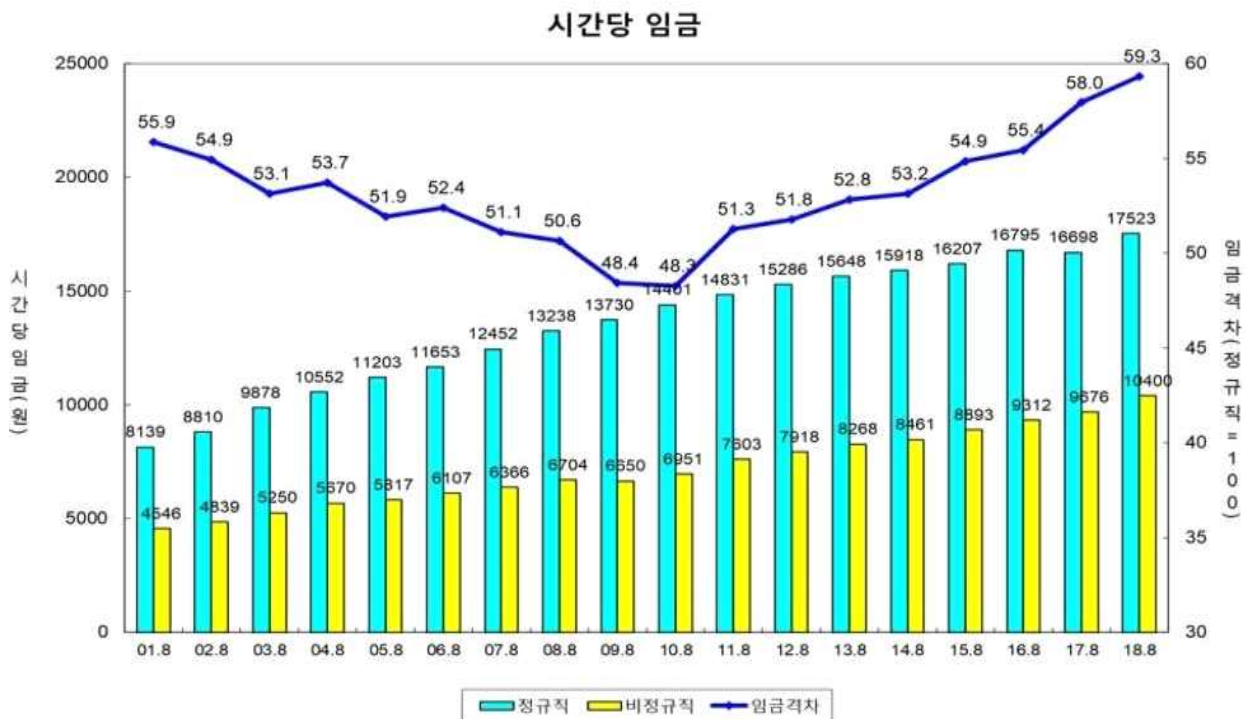
	월 임금총액(만원)					시간당 임금(원)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평균값	223	230	237	242	256	12,533	12,918	13,464	13,722	14,607
하위 10%	80	80	80	80	90	4,989	5,410	5,757	5,987	6,908
50%	190	200	200	200	210	10,234	10,362	10,788	11,513	11,513
90%	400	420	450	450	454	23,026	23,602	25,041	24,753	25,905
P9010	5.00	5.25	5.63	5.63	5.04	4.62	4.36	4.35	4.13	3.75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8. 8)

○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매우 심각.

- 2018년 8월의 월 임금총액이 여자(194만 원)는 남자(305만 원)의 63.8%고, 비정규직(163만 원)은 정규직(321만 원)의 50.7% 수준. 남자 정규직 임금(358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97만 원)은 54.9%, 여자 정규직(256만 원)은 71.5%, 여자 비정규직(134만 원)은 37.5%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

[그림]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고 있음.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8. 12)

- 저임금노동자 1/5.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 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위임금(11,513원)의 3분의 2' 인 '시간당 임금 7,675원 미만' 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04만 명 가운데 315만 명(15.7%)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45만 명(3.8%), 비정규직은 270만 명(32.9%)이 저임금 계층임. 정규직은 25명 중 1명, 비정규직은 3명 중 2명이 저임금 계층임.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 인 '133만 원 미만' 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04만 명 가운데 359만 명(17.9%)이 저임금계층임.

※ 2017년 대비 2018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2018년 1,060원 인상되었고, 이런 인상 효과로 추정됨.

3.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임금요구안 : 월 205,000원 인상 요구

1)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정책에 따라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하한선으로 월 205,000원 인상

(1) 민주노총은 2019년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안' 으로 경제성장을 및 물가상승률 예측치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반영하여 205,00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요구함.

① 임금요구안 산출을 위한 기준 임금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전산업 1인 이상 2018년 3/4분기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요구안을 산출함.

- 요구안(205,000원)

※ 1인 이상 : 전체(상용직 + 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임금 3,417,630원 X 6% = 205,000원

② 임금요구안 산출을 위한 검토사항

- 1인 이상으로 할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 노동자 임금(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약 75%)이 누락. 반면, 5인 이상으로 할 경우 약 350만명 규모의 4인 이사 사업장 노동자 임금이 누락.
-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민주노총 조합원도 비정규노동자가 30%를 초과

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노동자 임금요구안으로 상용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국, 1인 이상 전체 또는 5인 이상 전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민주노총 요구안은 최소한” 의 요구임. 따라서 1인 이상 전체 노동자를 기준 임금으로 함.

☞ 2018년 3/4분기 월별 평균임금 수준

- 1인 이상 : 전체(상용직 + 임시 일용직) 3,417,630원 / 상용직 3,636,311원
- 5인 이상 : 전체(상용직 + 임시 일용직) 3,737,254원. / 상용직 3,938,182원
- ※ 5인이상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하면 인상요구액은 224,000원

※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개요

조사범위 및 대상 : 농림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

- 고용부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25,000개 표본 사업체
- 근로실태부문: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3,000개 사업체

(2) 2019년 주요 노동·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노동자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소득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상률은 6.0%임.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미달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초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됨.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적폐정권의 일관된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심각한 소득분배 악화가 진행되어 왔음.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16%임. 이에 반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24%~3.34%에 불과함. 이에 따라 양자 간 격차는 1.82%~1.84%에 달하고 있으며 격차만큼 노동소득분배가 악화 되고 있는 것임.
- 2019년 임금인상에는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각각 2.7%, 1.5%), 지난 10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악화에 대한 소득분배개선분(1.8%) 등이 반영되어야 함.
- 이에 2019년 임금인상요구 최소기준으로 6.0% 인상률을 제시함.

※ 2019년 경제지표(전망치) / %

	정부	한국은행	OECD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2.6~2.7	2.6~2.7	2.8	2.5	2.5
물가상승률		1.4~1.7		1.7	1.4

☑ 임금인상률의 기본값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개선치 등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 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대단히 낮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인 기본값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등’을 합한 값을 웃돌아야함. 이러한 때 노동소득 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2) 임금인상 요구안 기준 변경 경과 및 기준임금 마련 근거

(1) 임금요구안 기준 변경 경과

- 생계비론은 대다수 노동자 임금이 저임금이고 노동자 내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을 때 이용가능. 그런데 1992년부터 노동자 내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생계비론의 한계가 나타남.
-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임금요구 방식은 이미 내용상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변화했음.
- 하지만 임금요구안 산출을 위한 생계비를 대체할 대안 마련이 부재하면서 계속 생계비론을 사용함.
- 결국 생계비론은 현실성이 낮으며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대안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근거로 임금요구안을 산출하고자 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거치면서 친재벌 반노동 정책에 따라 자본 소득 대비 노동소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안에 “노동소득분배개선치”를 추가함.

-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임금실태조사 연구” 사업 결과에 따라 기준 변경을 추가 개선 할 수 있음.

(2) 기준임금 마련 근거

- 현재 노동자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아래 표와 같음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유형	특징	
				장점	단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민간전산업	표본조사	- 월별조사로 시의성 있음. 임금수준 조사가 핵심	- 노동자의 다양한 인적 특성 분석불가. 공무원 등 제외
임금결정현황	고용	100인 이상	전수	- 수시조사로 시의성 높음	- 조사범위가 협소. 연초 타결률

조사	노동부	민간전산업	조사		저조로 자료의 대표성 낮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 조사	- 가구의 소득 조사	- 사업체 특성이나 인별 임금에 대한 분석 불가
고용형태별근 로실태조사	고용 노동부	1인 이상 민간전산업	표본 조사	- 민간부분 인적특성에 다 른 근로실태 파악	- 공무원 등 정부부문 임금노동 자 제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 조사	- 모든 임금노동자 조사	- 임금 및 근로시간 상세내역 미조사

- 위 와 같은 조건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실태 파악이 주 목적인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 다른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고자 함.

4.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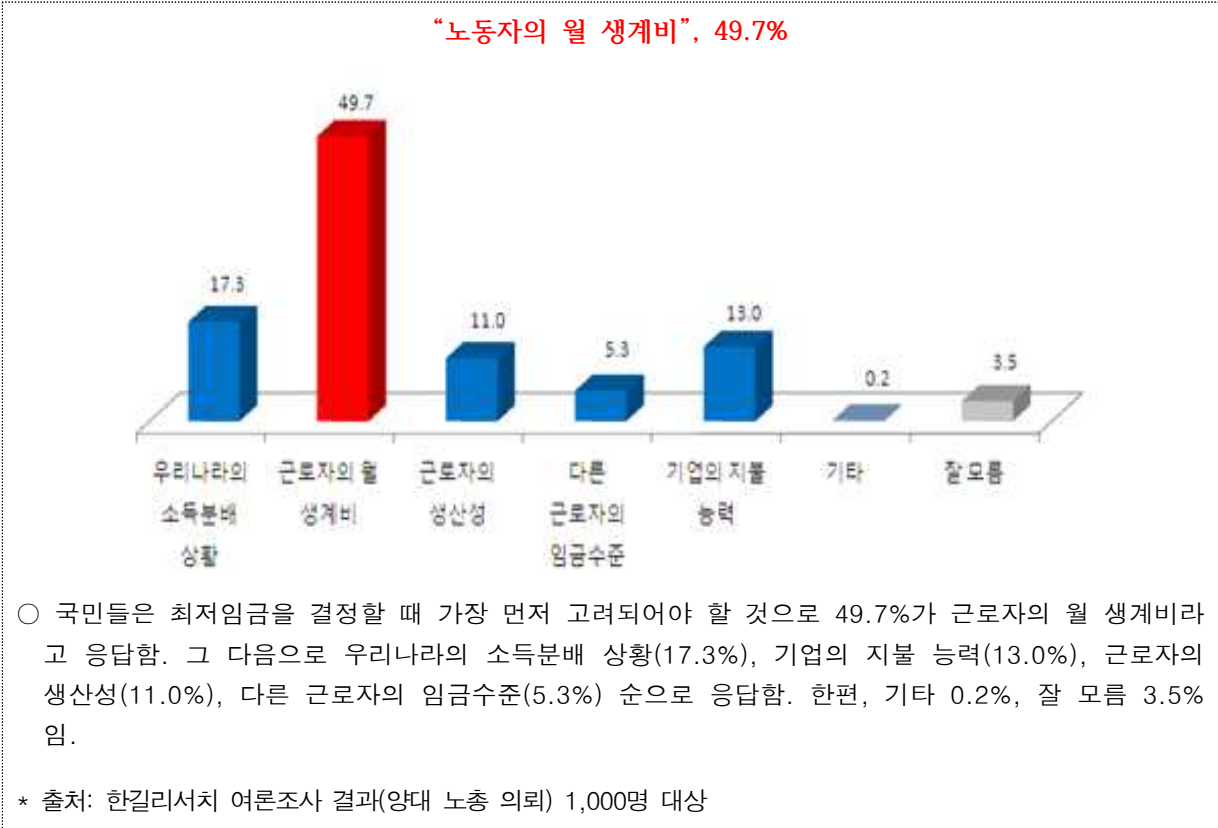
2020년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보장 정책에 따라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함

1) 최저임금 결정기준

-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동자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음. 민주노총은 위 결정기준 중 노동자생계비 특히, 가구생계비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가구생계비’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가구생계비는 국제적 기준임.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생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필요(ILO 협약 제131호)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것(UN 사회권규약 제7조)

둘째, 국민 2명 중 1명은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2015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이 절반이 원하고 있음.



2)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음

<표> 2017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시급 6,470원) 수준

가구원 구분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원)	최저임금(1,352,230원) 수준
전체 가구 평균값	2,862,273	47.2%
1인 가구 평균값	1,912,997	70.4%
2인 가구 평균값	2,963,077	45.6%
3인 가구 평균값	3,438,495	39.3%
4인 가구 평균값	4,147,183	32.6%
5인 이상 가구 평균값	4,682,089	28.8%

※ 2018년 생계비는 2019년 5월경 제출됨에 따라 2017년을 기준으로 비교함

- 위 표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 1인 가구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3인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40%에도 미치지 못함.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 되는 것이며,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임.

3) 최저임금인상 효과

- 임금불평등 격차가 축소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2017년 5.6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높았음. 그런데 이게 작년에 5.0배로 축소됨. 저임금노동자 비중도 줄었음.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060원 인상된 효과로 추정됨.

5. 민주노총 임금정책요구안

1) 최고임금제 도입

1. 현황

-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반면 조양호(한진제철 회장) 시급은 6,070,000원으로 최저임금대비 726배를 초과하고 있음.
- 스위스는 연봉을 종업원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독일은 이사임금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산업·국가의 유사한 회사의 임금수준을 고려하도록 함. 국내에서는 2016년 심상정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함.

2. 문제점

-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 임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726배를 초과한다는 것은 임금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부당한 자본의 폭력임.
- ‘슈퍼임금’은 최고위 경영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이기심’에서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임.

3. 요구안

- 이에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요구함

※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요구임.

2) 포괄임금제 폐지

1. 현황

-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음. 노동관계법 규정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로 관례화되어 있음.
-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 실태
 - ※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 30.1%(16년 노동연구원), 상용직 10인 이상 사업체는 52.8% 적용(17년 고용노동부), 사무직 노동자의 41.3%(17년 노동연구원) 적용.

2. 문제점

- 법적 판례는 엄격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외에 계산상의 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
-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무료(공짜) 노동이 용인되고 있는 상황.
- 사무직 뿐만 아니라 건설업, 제조업 생산현장 등에서도 사용되는 등 전산업에 걸쳐서 포괄임금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3. 요구안

- 정부 차원에서 포괄임금 용인하는 행정해석 및 지침 즉각 폐기
- 근거없는 포괄임금제 허용 사유 반대
- 즉각적인 포괄임금 근절 지침 마련 및 시행
- 포괄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전면 강화
-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는 기형적인 포괄임금 체계 근절,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 임금하락 없는 포괄임금제도 폐기